

|   |  |
|---|--|
| <p>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섬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li> <li>○ 하상 청소에 수고한 특전사 대원들을 환대해 주고, 계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전사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강구</li> <li>○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li> <li>○ 난지 한강공원의 캠핑장 신설은 잘한 일이며, 이번 시범운영을 참고해서 타 한강공원에도 확대 신설한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일반시민이 가족 단위로 본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li> </ul> <p>IV. 기타 감사의견, 자료제출 등 — 1건</p> <p>가. 한강관리사업소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전에 조순 시장과 함께 밤섬 청소를 위하여 밤섬을 방문시에 밤섬에 밤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사비(私費) 100만원을 보내서 밤나무, 조팝나무, 쥬萸나무 등을 심은 일이 있는데 그 후의 생성상태를 확인해 주기 바라면서, 추가로 사비(私費) 100만원을 기부할 것이니 전액 밤나무만을 식재할 수 있는지의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람.</li> </ul> <p>.....</p> <p>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첨회안</p> <p>서울특별시장이 1999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유</p> <p>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99.4.22)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11.11자로 시의회에 부의하였으나,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조항변경 및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 개입이 우려되는 조항 삭제 요구 등 추가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기이부의된 조례안을 새로이 경비하여 재부의코자 철회함.</p> <p>.....</p> <p>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p> | <p>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총괄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99.4.15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응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li> </ul> <p>(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5. 10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및 충전시설 설치자금의 응자지원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관련 재정지원조례" 제정 당시에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응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9.4.15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6조의2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안 1조에 응자금 지원 외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임.</li> <li>○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서울시내 79개 운수업체 시내버스 총 8,391대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목표 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인 1999년부터 2002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2,000대, 충전시설은 40개소를 추진하며, 2단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6,391대 전원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년도 도입계획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480대와 충전시설 13개소를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음. '99.12월 천연가스 시내버스 제작사와 환경부간에 최종 합의된 천연가스 시내버스 가격은 종전의 예정가격 7,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결정되어 경유버스와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구입가격의 차액 3,10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하고, 구입 1대당 1,650만원을 무상보조(국비 및 시비 각 50%)하고 1,450만원은 연리 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총 69억 60백만원을 시비로 추경편성 조치하고, 충전시설 설치비용 개소당 7억원은 국비에</li> </ul> |
|---|--|

|   |  |
|---|--|
| <p>서 전액 응자지원으로 되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7개소만 응자 지원되어 나머지 6개소는 도시가스 기금에서 응자지원으로 하여 2000년도 소요예산은 총 239억 80백 만원으로 국비 88억 60백만원, 시비 109억 20백만원, 도시가스기금 42억 원임.</p> <p>○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재정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의안심의 과정에서도 국고보조 지원문제,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당가격 결정,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제반 기반조성, 천연가스 소매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날로 심화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경유차 시내버스를 저공해 버스로 교체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39억 60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확보하고, 2000년도 천연가스 도입 목표를 당초 200대에서 480대로 확대하는 등 서울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 운수업체로서는 보조비율이 당초 66%에서 53%로 하향조정되고 응자비율이 34%에서 47%로 들어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저공해 시내버스 도입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응자조건도 국비와 도시가스기금도 시비와 동일조건으로 저리응자 지원하는 방안과 교통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및 신규차량 교체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의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p> <p>.....</p> <p>서울특별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응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응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p> | <p><b>서울특별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b></p> <p>서울특별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중 “환경정책 기본법 제34조”를 “대기환경 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로, “응자”를 “보조 및 응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로 한다.</p> <p>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재정지원대상) 자금의 재정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li> <li>2. 응자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li> </ol> <p>제3조의 제목 “(응자한도액)”을 “(재정지원한도액)”으로 한다</p> <p>제4조의 제목 “(응자 및 상환조건)”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조의 제목 “(응자계획의 공고)”를 “(재정지원계획의 공고)”로 하고, 동조본문 중 “매년도 말까지”를 “매년도 초에”로, “다음년도 자금 응자 계획”을 “당해년도 재정지원 계획”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지원대상</li> <li>2. 재정지원총액</li> <li>3. 재정지원한도</li> <li>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li> </ol> <p>제7조의 제목 “(응자신청 등)”을 “(재정지원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본문 및 제3호·제4호 중 “응자를”을 각각 “재정지원을”으로 한다.</p> <p>제8조의 제목 “(응자심사회의 개최 등)”을 “(재정지원심사회의 개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자금의 응자대상, 응자금액”을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자금 응자심사회의”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관련 재정지원심사회의”로 한다.</p> <p>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 계획금액을 초과</p> |
|---|--|